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12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남평우)

가. 제안이유

○ 채무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
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한 자구방안 강구와 효
율적인 채무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
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함(안 제2조)

○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(안 제3조)

○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로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
(안 제4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? 자치단체장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지?	<input type="radio"/> 중앙과 도에서 지시에 의해 예산액 대비 일정비율(30%)의 지방채가 있는 경우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<input type="radio"/> 지방채 현황은?	<input type="radio"/> 1716억입니다.
<input type="radio"/> 2000년 지방채 발행 액수는?	<input type="radio"/> 540억입니다.
<input type="radio"/> 지방채가 많은 이유는?	<input type="radio"/> 시장취입 전부터 기이 계속되는 대형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-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0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13

제출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채무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감체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한 자구방안 강구와 효율적인

채무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

-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격을 한단계 높게 지정함이 타당

2. 주요골자

- 조례안 내역 중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“지방체 담당과장”에서 “지방체 담당국장”으로
- 기금출납원을 “지방체 담당”에서 “지방체 담당과장”으로 수정(안 제7조제1항 제1, 2호)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지방체 담당국장
2. 기금출납원 : 지방체 담당과장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지방체 담당과장 2. 기금출납원 : 지방체 담당</p>	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....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지방체 담당국장 2. 기금출납원 : 지방체 담당과장</p>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0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채무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갑체 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한 자구방안 강구와 효율적인 채무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을 재원으로 조성함(안 제2조)

-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(안 제3조)
-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(안 제4조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지방채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.)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
 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-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정운용상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기금의 적립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의 심의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지방채담당국장
2. 기금출납원 : 지방채담당과장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.